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8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  
【집행부발의】  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11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8.

기획재경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장)
- 발의일자: 2024. 11. 6.(수)
- 회부일자: 2024. 11. 6.(수)
- 검토기간: 2024. 11. 6.(수) ~ 11. 15.(금)

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통합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2023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
-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·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(안 제명)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(안 제3조)
  - 포럼, 세미나,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

-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 등의 추진 및 지원
-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·공공기관 등의 유치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  -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안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6조)
  -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
  - 당연직 위원 구성, 위원의 임기·연임에 관한 사항
    - ※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67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외
- 회의 소집·통지, 간사 등에 관한 사항, 운영세칙(안 제7조~제8조)

##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24. 10. 2.~10. 22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,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통합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시행(2023. 7. 10.)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【관 계 법 령】

### 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[시행 2023. 7. 10.]

제67조(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, 시·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[시행 2024. 1. 16.]

제67조(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
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3. 해당 시·군·구 지방의회 의원
4. 해당 시·군·구 공무원
5.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
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⑤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